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내부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과과정

제 2 조 (교과과정) ①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 인증프로그램의 교과목 개설 및 이수기준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SPC 이수를 위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5.10.23)

②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SPC 이수를 위해 신설된 교과목의 경우, 신설 SPC 이수교과목은 개설된 해당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단, 편입/전과 학생의 경우, 개설 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편입/전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2.24. 개정 2025.10.23)

제 3 조 (설계교과목) ①설계교과목은 리빙플랫폼디자인스튜디오, 건축설계 스튜디오로 구분한다.(개정 2016.2.15)

②분반별 수강인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③분반별 수강신청 인원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분반별 수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매 학기 첫째 주 설계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⑤1, 2학기 모두 동일한 교수의 설계교과목 선택을 지양한다.

⑥설계교과목은 1~2학년, 3~4학년, 5학년의 학년군으로 묶어 순차적으로 이수한다.(개정 2021.12.22.)

제 3 장 이수기준

제 4 조 (수강학점) ①한 학기에 설계교과목은 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단, 1학년 설계교과목에 한해서 재수강자 및 전·편입생은 1,2학년 설

계교과목을 동시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24.2.22)

②수강신청 및 교과과정지도는 전·편입생에 대하여 인증PD교수가 하며, 전·편입생이 아닌 경우는 책임지도교수가 담당하고, 상담 및 지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한다.(개정 2024.9.1.)

제 4 장 비교과과정

제 5 조 (비교과과정) ①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전공역량과 핵심역량의 배양과 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

제 6 조 (비교과과정 이수기준) ①학교에서 인정하는 역량마일리지 점수와 학과가 인정하는 역량마일리지 점수를 합산하여 졸업 사정 때까지 총15,000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4.9.1.)

② 역량마일리지 취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수료증 및 기타 증빙이 가능한 증서를 졸업사정 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턴십) ①건축 관련분야 회사에서 인턴십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턴십 일지를 작성한 경우, 건축학과가 인정하는 역량마일리지 지급기준표[별표1]에 따라 부여한다.(신설 2024.9.1.)

제 8 조 (인턴십 이수기준) 최소 4주 이상 실습하며,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총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4.9.1.)

제 5 장 전·편입학생 허가

제 9 조 (전형방법) ①우리대학이 규정한 전형방법을 따른다.(개정 2024.2.22)

②건축학과 전·편입학생은 전·편입후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③건축학과 전·편입학생은 전·편입후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 10 조 (설계교과목 학점인정) ①전적대학 건축관련 전공자에 해당한다.
②전적대학 설계교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본 학과 1, 2학년의 설계교과목 학점기준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③설계교과목의 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설계교과목 학점 수의 최대 인정은 학년 단위로 인정한다.(개정 2019.10.25.)

제 11 조 (전공 교과목 학점인정) ①전공 교과목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교양과목 및 설계교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65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4.2.22)
②편입학생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7.4.17)
③건축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편입 시 인정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시까지 전공교과목 12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개정 2022.2.25.)

제 6 장 졸업

제 12 조 (졸업설계) 졸업예정자는 우리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논문을 졸업설계로 대체하여 심사받는다.

제 13 조 (졸업설계 제출자격) 졸업설계 제출자격은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14 조 (졸업설계 심사 및 심사항목) ①건축학과 전임교수 전원과 졸업설계 담당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②평가는 P(금제)와 NP(낙제)로 하며, NP(낙제)를 받은 자는 판정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심사항목은 졸업설계 작품, 졸업설계 설명서, 포토폴리오로 한다.(신설 2011. 2. 21)

제 15 조 (졸업설계 심사시기) 매 학기 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졸업설계 심사일을 정한다.

제 16 조 (졸업사정) ①졸업설계 심사를 통과하고 역량마일리지 이수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공과대학 졸업사정회의에 통보한다.(개정 2024.9.1)

②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 위원은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신설 2011.2.21.)

③교과목 개설 및 SPC이수기준에 따라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SPC이수 여부는 아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SPC 이수 여부 판단 교과목: 리빙플랫폼디자인스튜디오1, 건축의이해및실습, 리빙플랫폼디자인스튜디오2, 조형원리, 건축설계스튜디오1, 서양건축사, 건축구조역학, 인간행태와심리, 건축계획, 건축설계스튜디오2, 디지털모델표현기법, 청주도시건축론, 한국건축사, 건축설계스튜디오3, 도시공간설계, 건축일반구조와재료계획, 건축설계스튜디오4, 건축설비계획, 건축법과제도, 건축의장연습, 건축설계스튜디오5, 친환경건축론, 건축구법과외피디자인, 철근콘트리트구조계획, 건축설계스튜디오6, 건축공간론, 빌딩시스템테크놀러지, 건축시공기술, 건축설계스튜디오7, 건축실무경영과사회, 건축예산관리, 근현대건축론, 건축설계스튜디오8) (개정 2025.10.23.)

④교과과정 개편시 변경된 교과목에 대한 인정은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역량마일리지 미충족학생은 인증프로그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제 7 장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제 17 조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 ①국제 인증기준에 부합된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건축학과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본 학과 재직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재직 전임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건축학과 제반 규정의 제정과 폐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전입생 허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졸업설계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6. 겸임교수 위촉에 관한 심의 사항
7.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은 2009학년도 졸업 예정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 중 졸업사정시 필요한 역량마일리지 기준은

(2024학년도 기준) 1학년 13,500점, 2학년 10,500점, 3학년 7,500점의 역량마일리지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역량마일리지 지급기준표

2024년 9월 1일 시행

**학과인정 역량마일리지			학교인정 역량마일리지(학과 관심항목 예시임)		
프로그램		점수	프로그램		점수
전공역량향상 프로그램 (특강, 워크숍, 세미나 등)	1시간이상	100	영어능력	토익(630~719)	400
	2시간 이상	150		토익(540~629)	200
	23시간 이상	200		토익(540점미만)	100
전공역량향상 프로그램	국내현장답사참여 (단발성)	100	자격증인증	국가전문자격	2000
	베스트스튜디오 작품상 수상	200		국가기술자격(1급)	1500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입상	100		국가기술자격(2급이하) 및 기능사 자격	1000
	기업탐방	100			
학습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국내대회)	공모전 및 경진대회 예선 참가(중복가능)	200	학습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교내대회)	공모전 및 경진대회 예선 참가	200
	대상	500		대상	250
	금상, 최우수상	400		금상, 최우수상	200
	은상, 우수상	300		은상, 우수상	150
	동상이하	200		동상이하	100
	입선	100		입선 50	50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 워크숍, 세미나 등)	1시간이상	100	* 학교 인정 역량마일리지는 CJU 역량마일리지 장학제도를 기준으로 매해 학교가 공지한 지급기준표를 따름. ** 학과인정 역량마일리지는 변경이 있을때 따로 공지하며 공지가 없으면 이전 기준을 따름.		
	2시간이상	150			
	3시간이상	200			
	4시간이상	250			
	5시간이상	300			
인턴십	4주이상	400			
학과소통 프로그램	동문체육대회참여	100			
	동문회와의 건축작품 품평회	100			
	학과 MT참여	200			
	기타 각종 학과프로그램 참여	100			
지역소통 프로그램	충북건축가회 시민건축학교 수료	100			
	건축사진공모전 수상	100			
	고교 건축학과 홍보	100			
	충북디자인캠프	500			
	기타 각종 지역프로그램 참여	100			